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⁶ H04M 1/66	(11) 공개번호 특 1997-0078284	(43) 공개일자 1997년 12월 12일
(21) 출원번호 특 1996-0015690		
(22) 출원일자 1996년 05월 11일		
(71)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김광호		
(72) 발명자 김수석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청구 : 있음

(54) 키폰단말시스템의 카드를 이용한 사용제한장치 및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카드가 이용하여 키폰단말기의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2.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키폰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대응하여 등급을 설정하여 놓으므로 등급이 낮게 설정한 키폰단말기에서 어느 누구도 등급이 높은 서비스인 국외전화 및 시외전화등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키폰단말기에서 카드판독기를 장착하여 카드판독기에 카드가 실장될 경우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 데이터를 감지하여 그 등급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키폰단말시스템의 카드를 이용한 사용제한장치 및 방법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키폰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키폰 단말기에 카드판독기를 장착하여 상기 카드판독기에 카드가 실장될 경우 상기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 데이터를 감지하여 그 등급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키폰시스템의 사용제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급데이터는, A급, B급, C급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시스템의 사용제한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급은 국제통화까지만 가능하고, B급은 시외통화까지 가능하고, C급은 시내통화까지 가능하며, D급은 내선통화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시스템의 사용제한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는 IC카 또는 스마트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시스템의 사용 제한장치.

청구항 5

카드판독기를 장착한 키폰단말기를 구비한 키폰시스템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카드판독기에 카드가 실장될 경우 상기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 데이터를 감지하여 그 등급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키폰시스템의 사용제한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는 IC카드 또는 스마트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 시스템의 사용 제한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